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07호 2011. 1. 3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96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현장 공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 3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3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4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호 보상계획공고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3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4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석남동 111-78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9점)을 고시합니다.

2011. 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석남동 111-78번지 일원
- 측량연월일 : 2011년 1월 24일(지적도근점 9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계양좌표		비고
		X	Y	
6988	지적도근점	-4586.77	-3100.72	
6989	지적도근점	-4672.00	-3102.72	
6990	지적도근점	-4657.37	-3035.73	
6991	지적도근점	-4655.79	-2987.87	
6992	지적도근점	-4712.46	-2940.10	
6993	지적도근점	-4796.86	-3015.41	
6994	지적도근점	-4917.24	-3115.81	
6995	지적도근점	-4911.53	-3176.02	
6996	지적도근점	-4822.12	-3172.3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96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공고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융자계획

- 가. 도시가스사업기금 총액 : 709백만원 이내
- 나. 도시가스사업기금 용도 :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대출시 이자차액 보전
- 다.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 라. 대출한도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실비용)
- 마.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서구청지점
- 바. 상환기간 : 3년 균등분할상환
- 사. 대출금리 : 년 7%(자부담 2%, 구지원 5%)
- 아. 자격요건 : 2011년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로서
관내 해당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주여야 함

2. 용자대상자 선정

- 가. 용자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용자대상자로 추천
- 나. 용자대상추천자로서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다. 용자제외 대상 : 무허가(위법)건축물, 아파트, 공급관이 없는 지역,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3. 용자대상 우선순위

- 가. 단독주택
- 나. 다가구주택
- 다. 다세대(연립주택)
- 라. 상가주택(주택부분)

4. 서류 제출처 및 처리절차

-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민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인천도시가스사(주)에 확인(☎570-7806)
- 나. 서구청 경제지원과,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 다. 구비서류(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 접수필증 사본 1부)
- 라.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용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결과를 신청인 및 취급은행에 통보

5. 기타사항

- 가. 자금의 상환,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협약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시행.
- 나.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에너지관리팀, ☎560-446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0. 10. 6.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01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 명칭의 통일과 직원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 각 구의 센터 명칭의 통일
 -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 직원의 정원 변경
 - ▷ 4명 → 6명 (근거 : 201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 ※ 「2010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함”을 적용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직원 임기 변경 : 센터장 및 직원(2년 → 3년)
- ▷ 조례 제4조 제3항 위탁기간 3년과 통일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고,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서비스과장,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담당과장,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하고,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고”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팀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요원 등 4인”을 “일반직원 등 6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연봉제로 한다.”를 “연봉제로 하며, 보수 기준액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및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센터의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센터의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소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센터운영위원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직원의 임기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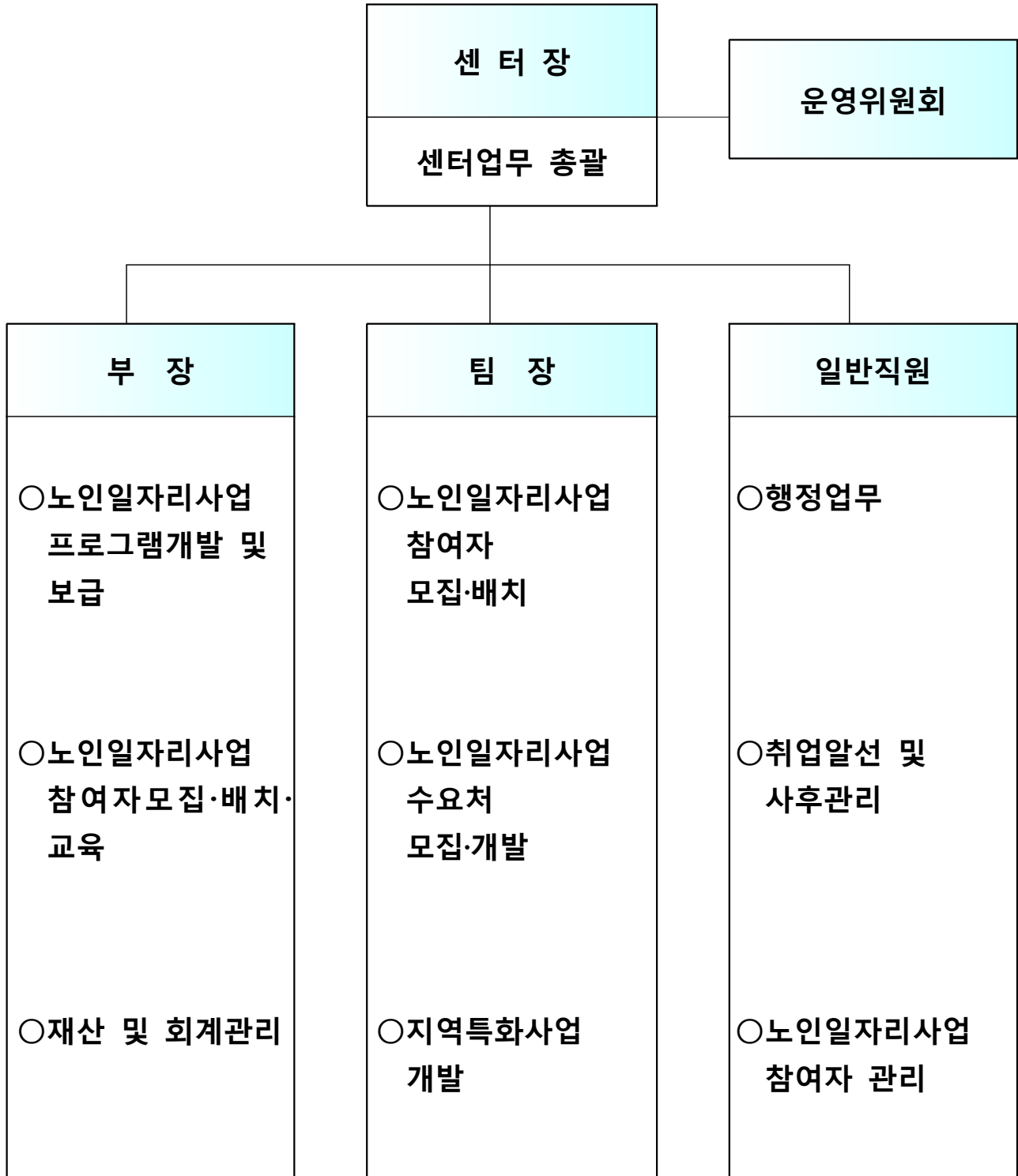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부 장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조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5.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4.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일 반 직 원	1. 전산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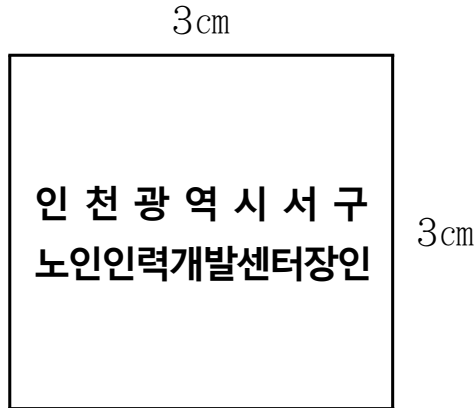
[별표 2]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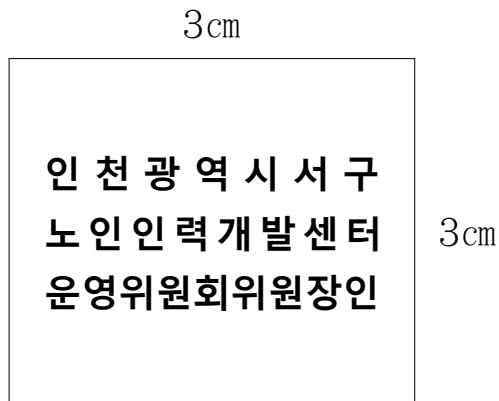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0. 10. 6.자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 의거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 임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에서도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명변경
 - ▷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노인복지회관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정
 - ▷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고,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시설 명 :

○ 소재 지 :

○ 규 모 : 대지 m^2 , 연면적 m^2

○ 위탁내용 :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접수장소 :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할 능력이 있을 것.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노인복지관 대강당

4. 참가자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 (소정양식)

나. 사업계획서

다. 해당연도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마.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사.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문의(☎ -)

나. 신청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1. 시설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명		법인구분	시설(), 지원()
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주민번호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재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	노인복지(○년○월), 영유아보육(○년○월), 아동복지(○년○월), 장애인복지(○년○월) 모자복지(○년○월), 정신보건(○년○월), 부랑아복지(○년○월), 사회복지관(○년○월)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시설명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기간) ① "갑"은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을"의 연장신청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의 범위·운영)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본사업
2. 재가복지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 경로식당
5.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6. 노인일자리사업
7.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을"은 사업에 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목적, 종교활동, 사행성활동, 그 밖에 "갑"이 금지하는 활동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간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재산의 범위·관리) ① "갑"은 사업운영에 따른 다음 재산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 재산의 표시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② "을"은 0000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관리보조) ①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 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① "을"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 및 직제, 인사 및 보수기준 등 운영전반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갑"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사업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갑"은 사업의 운영 및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 ① “갑”은 “을”이 이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중이라도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지통보)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일) ① 사업시행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사업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을”은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원 등의 승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시설장이 운영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운영하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부칙

이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협약일자 : 0000년 00월 00일

갑(위탁자)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을(수탁자) : 법인대표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해 지 신 청 서				
수탁자 기재사항	시설명			
	법인명		위탁기간	
	소재지		입주년월일	
해지신청자			퇴거예정일	
해지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수탁자 :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이 신청서는 퇴거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시설명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표]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사용 부대비용

부대비용	대상시설	기준시간	비 고
냉·난방기 사 용 료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1시간	<p>가. 시간당 연료비(전기 포함)는 시가로 계산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는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p> <p>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방은 6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난방은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한다.</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통서비스 이행기준 [전 문]

우리 서구 공무원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히 대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행정처리로 고객에게 불만족과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매년 고객에게 우리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와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각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주요내용

● 기획홍보 분야

1. 고객의 알권리 보장.
2. 공직자 부조리 추방
3. 신속한 민원처리
4. 열린 사이버 행정 구현
5. 사랑의 PC무상 수리 실시
6. 건정재정 운영

● 총무 분야

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
4.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5.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건의사항 신속처리

● 인재육성 분야

1.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2. 외국어활성화 사업

3. 평생교육
4. 학교경비 지원
5. 학교급식 지원 사업
6. 도서관 건립 및 운영
7. 교육지원사업 구민홍보
8. 건전 청소년 육성

● 재무 분야

1. 정보공개를 통한 공정한 계약 추진
2. 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 확보
3.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세무 분야

1. 지방세 부과·징수 서비스
2. 지방세 세무조사 서비스
3. 지방세 고객편의 서비스
4. 지방세 민원행정 서비스

● 민원봉사 분야

1. 친절서비스 제공
2. 민원편익 제공
3. 고객 알권리 제공
4. 여권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경제지원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지역경제 안정
3. 소비자 보호
4. 중소기업 지원
5. 도시가스 보급 및 에너지 관리

● 재난관리 분야

1. 재난재해종합상황 관리체제 유지
2. 재난관리대상시설 및 재해위험지역지구의 관리
3. 민방위 행정서비스

● 주민생활지원 분야

1. 민원접수 처리 서비스
2.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 및 지원안내
3. 긴급복지지원
4. 서비스연계
5. 고용촉진

● 복지서비스 분야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아동복지
4. 여성복지
5. 보육복지
6. 드림스타트복지

● 문화관광체육 분야

1. 구민 문화의 질 향상

2.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3. 문화재 관리
4. 생활체육의 활성화
5. 관광안내체계 개선
6.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추진

● 환경보전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수질보전
3.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4.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으로 맑은 공기질 확보
5.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실시
6. 오존경보제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제공
7.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 위생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운동 전개
3. 식품의 안전성 강화
4.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
5. 식중독 예방관리
6. 먹는 물 안전관리
7. 불법영업 근절
8. 위생감시공무원 크린운동 전개
9. 행정처분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청소행정 분야

1. 생활쓰레기 수거철저로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2.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3. 신속한 청소민원 처리
4.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 홍보
5.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6. 오수·분뇨의 적정 처리
7. 폐기물 자율관리와 적정처리 유도

● 건설 분야

1.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2. 도로개설 및 도로현장 모니터링 관리
3. 하수 관리
4.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5.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

● 건축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건축(물) 민원 처리
3.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 도시개발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3. 주민참여 적극 활용

● 녹지경관 분야

1. 쾌적하고 푸른 서구 만들기
2. 공공 시설물 관리
3. 옥외 광고물 관리
4. 주민참여 적극 유도

● 토지정보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부동산중개사무소
3. 개별공시지가
4. 토지이용계획
5. 새주소
6. 토지거래

● 교통행정 분야

1. 주차장 확충사업
2. 주차장 관련 민원안내
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 불법 주·정차 단속

● 교통민원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주택가 도로변 화물차,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3. 자동차 등록·정비·지도(점검) 철저

● 보건행정 분야

1. 민원서류를 법정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2.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 적극적인 전염병 관리 및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 분야

1. 주민 건강실천을 향상
2. 모자보건사업에 최선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4.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도모

● 검단보건지소 분야

1.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2.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3.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

● 검단출장소 분야

1. 민원봉사 부분
 - 친절서비스 제공
 - 민원편익 제공
 - 고객 알권리 제공
2. 재무 부분
 - 정보공개를 통한 공정한 계약 추진
 -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3. 세무 부분
 - 지방세 부과·징수 서비스

- 지방세 세무조사 서비스
- 지방세 고객편의 서비스
- 지방세 민원행정 서비스

4. 위생 부분

- 신속한 민원처리
- 불법영업 근절
- 위생 감시 사전예약제 운영·실시
- 행정처분 절차의 투명성 확보

5. 지역경제 부분

- 신속한 민원처리
- 지역경제 안정
- 중소기업 지원

6. 건설 부분

-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
- 도로공사 및 도로 순찰 강화
- 하수 관리
- 보안등 유지관리
- 노점관리

7. 건축 부분

- 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물) 민원 처리
- 건축물 지번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 동 주민센터 행정 분야

1. 신속한 민원처리
2. 사회복지 서비스
3. 주민자치센터 관리
4. 민방위 관리
5. 쾌적한 환경 조성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 : 독가촌지구 소3-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1. 1.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도로명:소로3류1호선, 사업명:독가촌지구 소3-1호선(1공구) 일원 도로개설공사】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10-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호선)
 - 명 칭 : 독가촌지구 소3-1호선(1공구) 일원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규 모 : L=213.2m, B=6.0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7. 6월 ~ 2010. 08. 04.

【도로명:소로3류1호선, 사업명:독가촌지구 소3-1호선(2공구) 일원 도로개설공사】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3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호선)
 - 명 칭 : 독가촌지구 소3-1호선(2공구) 일원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규 모 : L=142.0m, B=6.0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9. 3월 ~ 2010. 08. 0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 기업,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조성
- 제6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및 전담 조직 구성

○ 제7조 에너지 절약 등 목표 설정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 제8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관리
-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2. 1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 : 032-560-4062, 팩스 : 032-560-4049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구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3.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조성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구는 사업자, 구민 및 각종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절약 등 목표 설정)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는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심정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심정경기장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서구 가좌동
4. 수용재결 대상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3-2외 6필지
5. 열람기간 : 2011. 1. 27. ~ 2011. 2. 14.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7.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2011. 1.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수용재결 대상자 명단

연번	소재지	지번	소유자	송달 주소	비고
1	서구 가좌동	453-2	구길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03-701	토지
2	서구 가좌동	447-1	성이용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2	토지
3	서구 가좌동	447-2	성이용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2	토지
4	서구 가좌동	447-3	조형익	인천부 부내면 우각동 152	토지
5	서구 가좌동	453-2	김진하	인천시 서구 가좌동 453-2	물건
6	서구 가좌동	452-5	김진하	인천시 서구 가좌동 453-2	물건
7	서구 가좌동	456-16	두순구	인천시 서구 가좌동 456-16	물건
8	서구 가좌동	452-5	윤소림	인천시 서구 가좌동 452-5	물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26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 1 . 28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공사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	2011. 2. ~ 2011. 5.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77-1번지 일원	L= 139m B= 6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11. 1. 28. ~ 2011. 2. 13 (16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560-4767)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 12필지 1,122㎡

위 치	지 번
인천 서구 검암동	253-11, 253-9, 253-13, 253-24, 253-8, 253-26, 산86-14, 253-25, 253-27, 253-17, 253-21
인천 서구 공촌동	산29-19

- 지 장 물 : 검암동 253-13, 253-17, 253-21번지의 비닐하우스 및 수목등 18개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3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용 비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1매당) : 62원 ○ A4라벨용지(1매당) :187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제공 = (450원×CD개수)+(25원×면수) 	